

[] 하천점용허가기간
[]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**연장신청서**
[]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) 106-83-00693
	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(성수동1가 642-25) (전화번호 : 02-3780-0842)	

허가연월일 및 번호	1998년 02월 19일	서울 제679호
점용(행위) 위치	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23, 서초구 잠원동 137	
점용(행위) 내용	옥외수영장 설치(뜰석, 잠원)	[점용(행위) 면적: 42,561㎡]
점용(행위) 기간	1998년 02월 19일부터	2008년 02월 18일까지(3,652일간)
연장기간	2008년 02월 19일부터	2023년 02월 18일까지(5,478일간)
연장 사유	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	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,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,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하천점용허가기간 []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[]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)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19년 2월 일

신청인
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



국토교통부장관, 지방국토관리청장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